

要 約

産災勤勞者 再活事業 5個年計劃

(2001 ~ 2005)

산재근로자

의존생활

직업이탈

2001. 1



目 次

計劃樹立背景

1. 現況 및 問題點 · 1

2. 推進方向 · 2

가. 與 件 · 2

나. 推進方向 · 2

3. 細部推進計劃 · 3

가. 醫療再活體系의 先進化 · 3

나. 職業再活機能의 內實化 · 4

다. 社會復歸 定着支援 擴充 · 4

4. 展望(向後 期待效果) · 5

5. 年次別 事業計劃 및 所要豫算 · 7

産災勤勞者 再活事業 5個年計劃(要約)

계획수립 배경

- ◇ 산재보험은 '63년 최초제정 이후 현금위주의 보상체계(급여 등 지급) 운영 등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중점
 - 치료종결후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등 장기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
- ◇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보완하고 보다 생산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
 - 재활사업을 중장기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, 연차적 사업운영 및 투자규모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음
 - ※ 노동계와 산재근로자 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재활사업을 확대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

1. 現況 및 問題點

○ 산재 장애인 현황

- 재활사업의 대상이 되는 최근 10년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후 1~14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은 산재장애인은 30만명정도(중장애자 35,000명) 추정

○ 산재보험재활사업의 문제점

- 산재환자에게 적합한 작업치료나 심리치료 제공 등이 미흡하여 효율적 의료 재활이 되지 못하고 있음
- '97년 재활훈련원의 근로복지공단 이관후 제도개선으로 중도탈락율 감소 및 작업복귀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훈련생 1인당 투자비용에 비하면 사후관리 소홀로 사회복귀 성과 미흡
- 산재근로자 가정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범위 한정으로 일부근로자만 중복 수혜 제공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

2. 推進方向

가. 여 건

- 산재근로자의 재활욕구 증가
- 산재보험의 종합적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 필요
- 일반장애인 복지시책의 변화
- 최근 실업증가 등 경제적 여건으로 장기요양자 계속 증가

나. 추진방향

- ◇ 재해발생에서 재활까지 총체적 서비스체계 구축
- ◇ 재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

3. 細部推進計劃

가. 의료재활체계 선진화 : 949억원

사업명	세부추진계획	목표	소요액 (억원)
1. 보장구지급및 운영체계 개선	○ 산재보험 보장구 관련 급여품 목 확대 및 현실화 ○ 보장구시스템 개선	○ (보장구)12종목 67품목→20종목 90품목 ○ (치료훈련)보행훈 련1종류→9종류 ○ 완전지급 및 평생 관리제 도입	110
2. 재 활 관 련 수가 개선	○ 산재환자에게 적합한 재활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실시	- 물리치료, 정신치 료, 화상환자 성형 수술 등	2
3. 후유증상진료 범위확대	○ 진료대상 상병 및 범위 확대	○ 3천명(2001)→ 12천명(2005)	403
4. 척추재활프로 그램 운영	○ 척추재해자 재활 프로그램 연 구 용역 실시 및 요통학교 운영	○ 200명(2002)→ 1,500명(2005)	93
5. 의료재활지원 사업 활성화	○ 진폐환자 적합한 프로그램 모 델 개발	○ 매년 500명	6
6. 산재의료관리 원 재활치료 기능 확대	○ 작업치료 중심으로 재활적응훈 련 확대개편 - 인천중앙병원 시범실시	○ 400명(2001)→ 4,500명(2005)	35
7. care -center 건립 추진 검토	○ care-center건립 : 1개소 - 경기요양병원 부지활용 또는 기존 요양병원을 개편 ○ 진폐환자 보호요양 시설 건립 : 1개소	○ 진 폐 환 자 집 중 지역 고려 건립 추진	300

나. 직업재활기능의 내실화 : 684억원

사 업 명	세 부 추 진 계 획	목 표	소요액 (억원)
1. 직업재활상담 제 확대운영	○ 재활 상담서비스 확충	○ 55명(2000년)→ 100명(2001년)	111
2. 재 활 훈 련 원 운영내실화	○ 재활훈련원 건립: 울주군 ○ 안산, 광주 훈련원 수용 능력확 충 및 교과목개선	○ 230명 (2001) → 500명(2005)	483
3.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활성화	○ 훈련비용 지원대상확대	○ 800명(2001)→ 1,000명(2005)	9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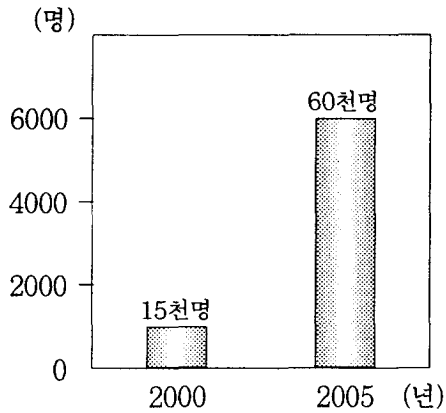
다. 사회복귀 정착지원 확충 : 1,365억원

사 업 명	세 부 추 진 계 획	목 표	소요액 (억원)
1. 자립점포임대 지원 사업	○ 수혜자 연차적 확대	○ 80명(2001)→ 500명(2005)	591
2. 산 재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확대	○ 생활정착금, 자녀장학금, 학자 금 등 대부사업확대 ○ 대학 재학관련학과 우수학생 장학사업 실시	○ 780명(2001)→ 1,800명(2005)	700
3. 사회 및 직업 적응훈련프로 그램 운영	○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위탁훈 련 실시	○ 200명(2001)→ 2,000명(2005)	41.5
4. 재 활 스 포 츠 지원	○ 척추 등 근골격계 장애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	○ 100명(2001)→ 500명(2005)	17.6
5. 산 재 근로자 가족단위재활 프로그램운영	○ 가족단위 캠프 및 의료기관 순 회 "작은 음악회" 개최		15
6. 산 재 근로자 정보관리시스 템 구축	○ 산재근로자 전과정 D/B구축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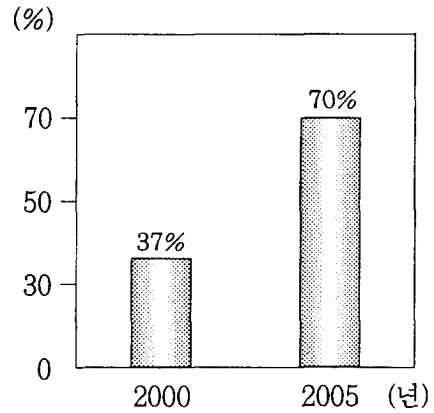
4. 展 望(向後期待效果)

○ 재활사업의 확고한 기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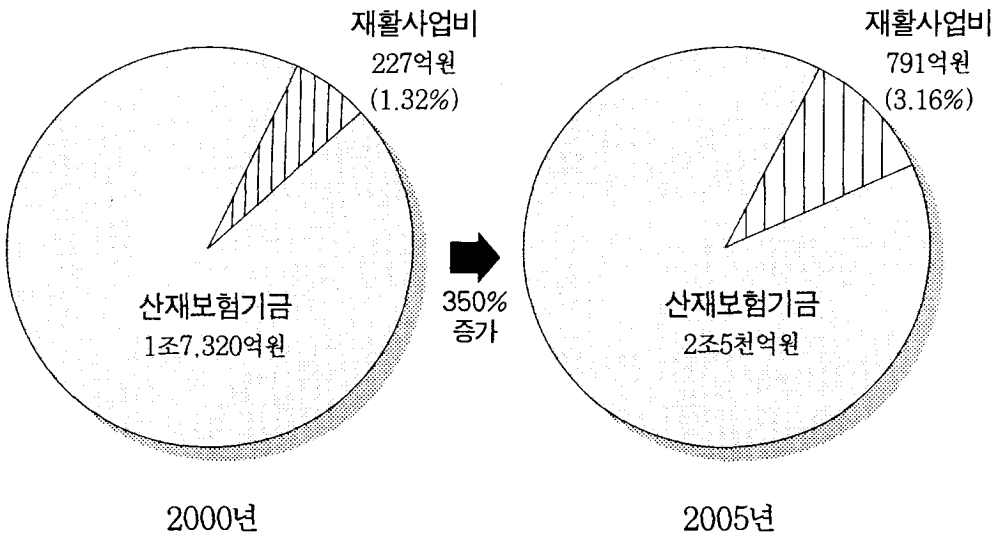
- 수혜인원 : 400% 증가



- 직업복귀율 : 190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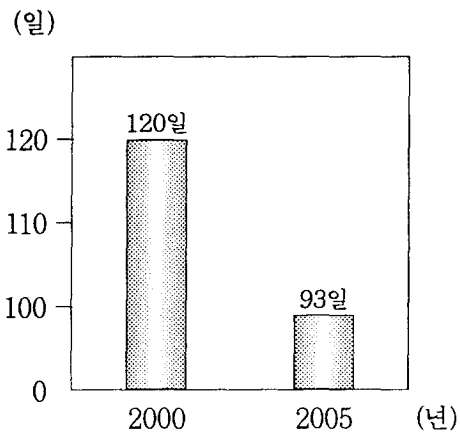


○ 재활투자액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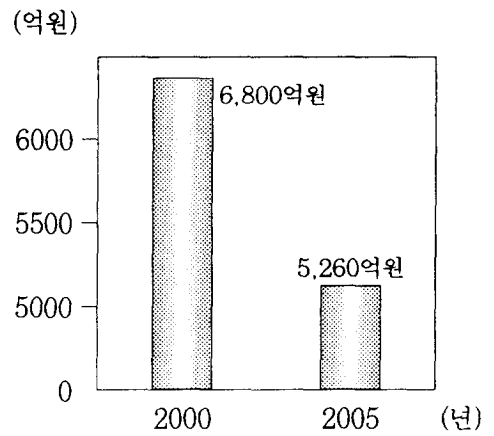


○ 합리적 요양관리 등 보상제도의 정착

- 1인 평균요양기간 단축
(매년 5% 감소)



- 요양 및 휴업급여 절감
(매년 5% 감소)



5. 年次別 事業計劃 및 所要豫算

(단위 : 억원)

사 업 명	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				
	2001	2002	2003	2004	2005
계	375.3	508.2	624.2	699.2	791.2
○ 기존 사업 활성화	370.2	446.2	514.2	574.2	626.2
- 보장구지급체계 개선	24	23	23	20	20
- 재활관련 요양비기준 개선	1	1	-	-	-
- 후유증상진료제	56	58	77	96	116
- 산재의료관리원 재활 중점 육성	5	10	10	10	-
- 직업재활상담제	11	22	24	26	28
- 재활훈련원 건립운영	143	105	70	80	85
- 직업훈련 위탁훈련	8	16	19	21	26
- 자립점포임대지원	41	100	150	150	150
- 의료재활지원사업	1.2	1.2	1.2	1.2	1.2
- 생활안정지원사업	80	110	140	170	200
○ 신규 사업 개발	5.1	62	110	125	165
- 사회 및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	1.5	4	8	12	16
- 재활스포츠지원	0.6	2	4	5	6
- 척추재활프로그램	-	3	15	30	45
- care-center 등 건립	-	50	80	75	95
-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	3	3	3	3	3

여 백

産災勤勞者 再活事業 5個年計劃

(2001 ~ 2005)

2001. 1

勞 動 部

여 백

目 次

計劃樹立背景

I. 産災再活事業 現況 및 問題點 · 15

II. 産災勤勞者の 實態와 欲求 · 25

III. 推進方向 · 30

1. 與 件 · 30

2. 推進目標 및 方向 · 31

IV. 細部推進計劃 · 33

1. 計劃總括 · 33

2. 醫療再活體系의 先進化 · 34

3. 職業再活機能의 內實化 · 41

4. 社會復歸 定着 支援事業의 擴充 · 44

5. 産災勤勞者 情報管理시스템 構築 · 49

V. 展望(向後 期待效果) · 50

VI. 年次別 事業計劃 및 所要豫算 · 52

여 백

계획수립 배경

-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1963년에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300여만명의 산재근로자에게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
- 지금까지 산재보험은 현금위주의 보상체계(급여 등 지급)의 운영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중점
 - 치료종결후 장애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등 장기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
- 그러나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보완하고 보다 생산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
 - 지금까지는 미흡했으나 중요한 분야인 재활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, 연차적 사업운영 및 투자규모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
 - ※ 노동계와 산재근로자 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재활사업을 확대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
-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산재보험에서의 재활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음

- 재활사업확충을 위하여 1997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
 - 2000년 노동연구원에서 산재근로자(요양중, 치료종결)를 대상으로 재활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
 - 학계, 노동계, 경영계, 근로복지공단, 산재의료관리원 등 관계전문가와 work-shop개최

※ 참고사항 : 사업근거(산재보험법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(이하 "보험사업"이라 한다)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,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99년 신설)

제78조(근로복지사업)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·운영
 - 가.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
 - 나.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
2.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3.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사업

제79조(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)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재해근로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I. 産災再活事業 現況 및 問題點

1. 再活事業 發展 經過

'95년 이전 : 단순복지사업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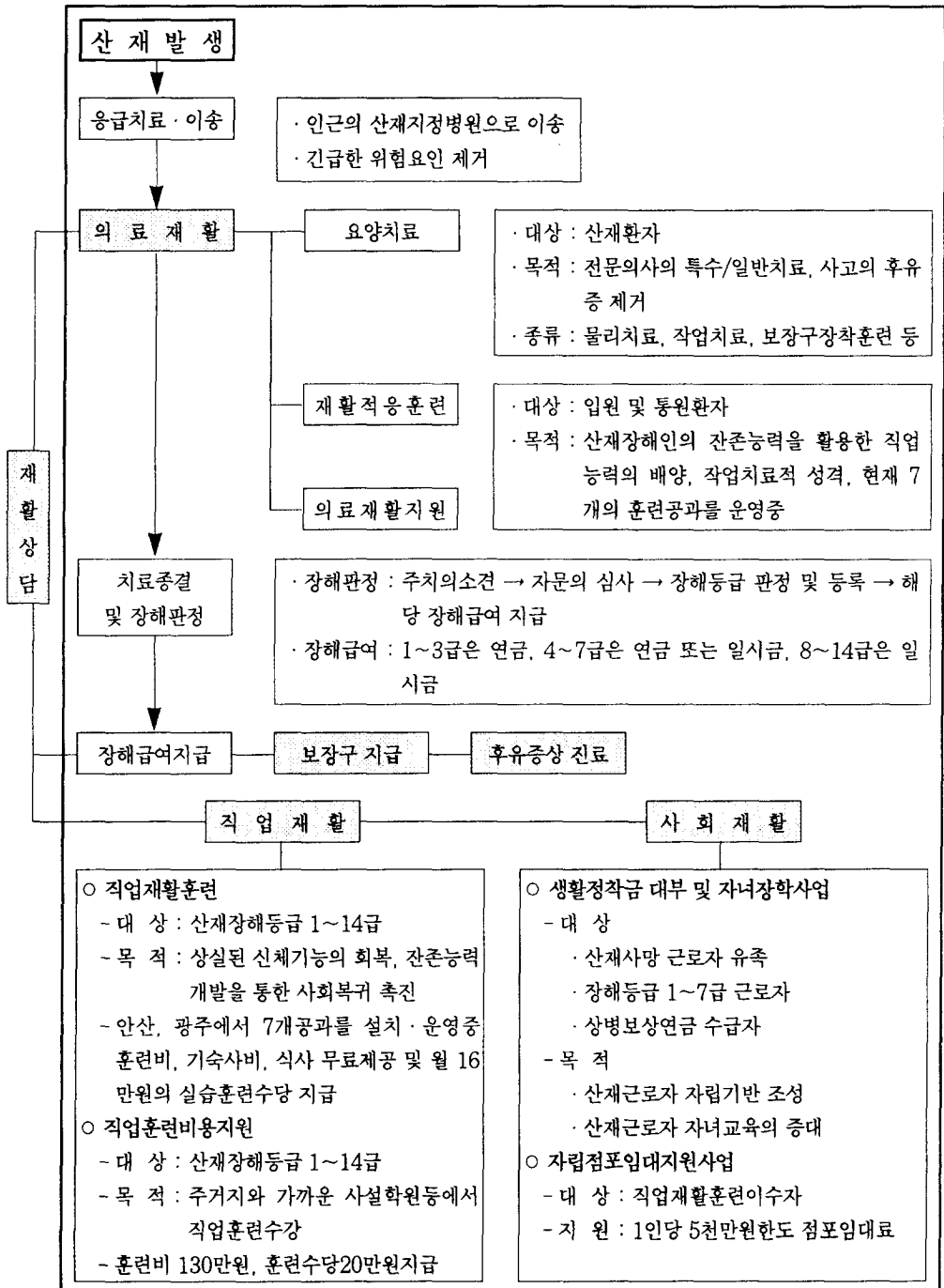
- 안산('85), 광주훈련원('92) 운영
- 산재근로자 장학사업('83), 생활정착금 대부사업('87)등 복지사업 위주로 추진



'95~2000 : 제도도입단계

- 근로복지에 재활사업부 신설('98. 10. 2)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재활 사업을 추진
- 노동연구원에서 “산재보험재활 및 사후관리 방안” 연구('98)
-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산재보험법 목적에 신설 ('99. 12. 31)

2. 産災保險의 再活서비스 體系



3. 現況 및 問題點

가. 最近 5年間 再活事業 豫算推移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96	'97	'98	'99	2000
보 험 금 예 산	1,551,552	1,893,507	1,903,513	1,580,030	1,731,901
재 활 사 업 비	9,985	9,334	8,691	5,784	22,778
○ 의 료 재 활	2,449	1,522	1,848	581	6,981
- 적 응 훈 련	263	196	312	-	340
- 공 학 센 터	2,186	1,326	1,536	581	1,010
- 후 유 증 상	-	-	-	-	5,631
○ 심 리 재 활	-	-	-	331	1,544
- 직업재활상담	-	-	-	103	1,088
- 의료재활지원	-	-	-	228	456
○ 직 업 재 활	536	812	843	3,872	8,253
- 훈 련 원	536	812	843	3,539	3,275
- 센 타 건 립	-	-	-	-	1,562
- 훈련비용지원	-	-	-	333	330
- 자립점포지원	-	-	-	-	3,032
- 기 타	-	-	-	-	54
○ 사 회 재 활	7,000	7,000	6,000	1,000	6,000
- 정 착 금	4,000	4,000	3,000	-	3,000
- 장 학 사 업	3,000	3,000	3,000	1,000	3,000
재 활 사 업 비 율	0.64%	0.49%	0.46%	0.37%	1.32%

※ 생활정착기금 330억원, 장학기금 283억원, 학자금 37억원

나. 醫療再活

- 1) 目的 : 산재근로자의 장애정도 경감 및 원상회복
- 2) 事業 : 재활물리치료, 보장구 지급, 후유증상진료 등
- 3) 事業種類別 現況 및 問題點

가) 再活物理治療

○ 재활치료 항목 및 인정기준

구분	치료항목	비고
물리치료	- 기본물리치료, 단순재활치료, 전문재활치료 -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전문의가 상근하여 물리치료사,작업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 - 재활사회사업치료 : 치료기간중 1회만 인정	- 입원은 1일 2회 - 통원은 1일 1회
정신요법	- 개인정신,집단정신,가족치료,작업 및 오락요법,정신의학적 사회사업등 - 정신과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	상 동

※ 자동차보험은 별도의 재활요법, 정신치료, 피부성형술 인정

○ 건강보험수가의 비현실화 및 급여항목 제한으로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기피

⇒ 적합한 작업치료나 심리치료 제공 미흡

나) 補裝具 支給

○ 의지 및 보조기 지급현황 : 11종 66개품목

년 도	수 급 자 수	건 수	지급액(천원)	1인평균지급액(원)
'99	1,625명	1,687건	498,587	306,823
2000. 9	2,470명	2,557건	825,886	334,367

- 보조기 수가 비현실화 및 지급 제한 ⇒ 보조기 구입에 따른 산재환자의 추가부담 상존

다) 醫療再活支援事業

○ 지원현황

- 진폐증 환자를 50명이상 수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취미활동반 운영에 따른 재료비 1인당 2만원 지원
- 2000.9 현재 3개 의료기관에 취미활동반 14개소 운영
- 참여인원은 314명, 지원금액은 7백만원

- 프로그램의 개발 미흡 등으로 진폐환자의 참여율 저조 (진폐환자 총 2,600명)

라) 後遺症狀診療制度

○ 진료대상

- 치료종결후 나타나는 동통 등 휴유증상 처치 및 진료(척수손상, 두부외상후증후군등 11개 상병)

○ 방 법

- 휴유증상카드를 발급하여 활용(2000. 7. 1 시행)

예 산 액	대 상 인 원	진 료 카 드 발 금
56억원	3,000명	531명

다. 職業再活

- 1) 目 的 : 산재근로자의 재활의식 고취 및 직업훈련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자립지원
- 2) 事 業 : 직업재활훈련,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, 직업재활상담원제 등

3) 事業種類別 現況 및 問題點

가) 職業再活訓練

○ 훈련현황

- 훈련기관 : 2개소 (안산, 광주훈련원)
- 훈련대상 : 1-14급 장애인
- 훈련과목 : 의상, 인쇄매체등 7개 과목
- 지 원 : 훈련비, 기숙사, 식사 무료제공, 훈련수당 월 16만원 지급, 수료후 자립점포 임대지원

- 훈련실적

구 분	'92~'96	'97	'98	'99	2000. 9
입 소 (명)	238	103	169	154	201
수 료 (명)	246	44	39	96	60
취 업 (명)	126	37	25	68	45
복 귀 율 (%)	45.6	84.1	64.1	70.8	75.0

- 재활훈련사업 도입초기에는 중장장애자를 대상으로 안산('85) 및 광주('92) 훈련원에서 인쇄, 봉제직종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산재장애자의 관심 저조로 훈련실적 미비
- 근로복지공단으로 훈련원 이관 후 시설 및 제도개선에 힘입어 훈련생 중도탈락 비율 감소 및 직업복귀율 향상
 - ※ 훈련생 중도탈락율 : '98(42.4%) → '99(29.2%) → 2000. 9월 (7.8%)
 - ※ 수료생 직업복귀율(취업·자영) : '98(64.1%) → '99(70.8%) → 2000. 9월(75.0%)

〈재활훈련원 제도개선현황〉

구 분	개 선 전	개 선 후
운 영 주 체	산재의료관리원	근로복지공단
훈 련 대 상 자	1~7급	1~14급
훈 련 과 목	의상·광고·인쇄	의상, 인쇄매체, 컴퓨터광고 디자인, 산업설비, 귀금속공예, 광고미술, 정보통신
훈련생 모집	수 시	분기별 모집
훈 련 수 당	없 음	훈련수당 지급, 월16만원
사 후 관 리	생활정착금 2천만원	자립점포임대 5천만원 지원

- 그러나 1인당 훈련투자비용 1,500만원-1,700만원에 비하면 취업 등 사회복귀 성과는 미흡

나) 職業訓練費用 支援事業

○ 지원현황

- 대 상 : 1-14급 장애인으로서 만 60세 미만자
- 훈련직종 : 국가기술자격법, 자격기본법의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
- 훈련기관 : 산재장애인 희망에 따라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용
- 지 원 : 1인당 130만원한도 훈련비용, 훈련수당 20만원, 훈련수료후 사회복귀준비금 15만원 지급

- 지원실적

구 분	'98	'99	2000. 10
선 발 (명)	225	178	634
수 료 (명)	148	123	250
탈 락 (명)	77	55	65
훈 련 중 (명)			319

- 동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훈련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훈련종료 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체계 미흡

다) 職業再活相談員 制度

○ 현 황

- 산재근로자의 전문적 재활심리상담을 위하여 '99. 9. 시범기간(8명)을 거쳐 2000년 55명으로 확대 실시
- 2000. 9월까지 총 18,507명에 대하여 초기 재활상담 실시
- 직업재활이 필요한 4,693명(25.4%)에게 직업재활계획을 수립
- 그 중 503명(10.7%)은 재취업 또는 자영업 실시

- 직업재활상담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10회 이상 개인면담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

- 재활상담원 1인당 관리하는 산재근로자의 누적으로 효율적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

※ 상담원 1인당 관리자

2000.1/4분기(27.4명) → 2/4분기(63.0명) → 3/4분기(95.8명)

라. 社會再活

- 1) 目 的 : 산재근로자의 가정생활 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
- 2) 事 業 :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, 생활정착금 대부사업,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및 학자금 대부사업 등

3) 事業種類別 現況 및 問題點

가) 自立店舖 貸貸支援事業

○ 지원현황

- 대 상 : 재활훈련원 이수자중 자영업 희망자
- 내 용 : 점포(전세금) 1인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%
- 기 간 : 최장 4년
- 2000. 10. 현재 26명, 9억4천만원 지원

○ 지원대상이 재활훈련원 훈련이수자에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

나) 生活定着金 貸付事業

○ 대부현황

- 대 상 : 산재유족, 1-7급장해자, 상병보상연금수급자
- 대부한도 : 담보대출 1,000만원, 신용대출 500만원
- 대부조건 :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(연리6%)
- 대부실적

기금조성액 (2000년 누계)	대부실적 및 금액(2000년 누계)			
	금 액	계	신 용	담 보
330억원	502억원	8,716명	4,988명	3,728명

○ 생활정착금 대부는 담보능력에 따라 차등지급됨에 따라 생활정착금으로서의 실효성 의문

다) 獎學事業 및 學資金貸付事業

○ 현 황

- 대 상 : 유족, 1-7급장애자, 상병보상연금수급자
- 장학금 지급 : 중고등학교 학비전액 (산재근로자 본인, 2자녀 한도)
- 학자금 대부 : 1학기당 200만원 한도(산재근로자 본인, 2자녀 한도)
- 대부실적

장 학 사 업(2000년 누계)			학자금 대부사업(2000년 누계)		
기금조성	지원인원	지원액	기금조성	지원인원	지원액
283억원	53,670명	297억원	37억원	2,120명	33억원

- 자녀의 학과성적과 관계없이 수혜대상 근로자의 자녀는 전원 지원을 받는 반면, 경증 장애자는 지원이 전무

4. 評 價

-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재활사업은 '97년 재활훈련원을 공단으로 이관 및 '98년 공단 재활사업부 신설이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, 아직 의료·직업·사회재활 각 사업간 연계체제가 미흡한 상태
- 부분적인 시설 확충, 단편적인 훈련실시 및 사후관리 소홀로 생산적 재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

Ⅱ. 産災勤勞者の 實態와 欲求

1. 實 態

-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장해급여 받는 장해자 특히 중장해자수(장해등급 1~7급)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

〈연도별 중장해자 1~7급 발생추이〉

(단위 : 명, %)

구 분	'96	'97	'98	'99
재해자수(A)	71,548	66,770	51,514	55,405
재해발생률(B)	0.88	0.81	0.68	0.74
장해자수(C)	27,394	28,854	24,759	19,591
장해발생율(C/A)	38.3	43.2	48.1	35.4
중장해자(1~7급)(D)	2,922	3,250	2,983	2,466
중장해발생율(D/A)	10.7	11.3	12.0	12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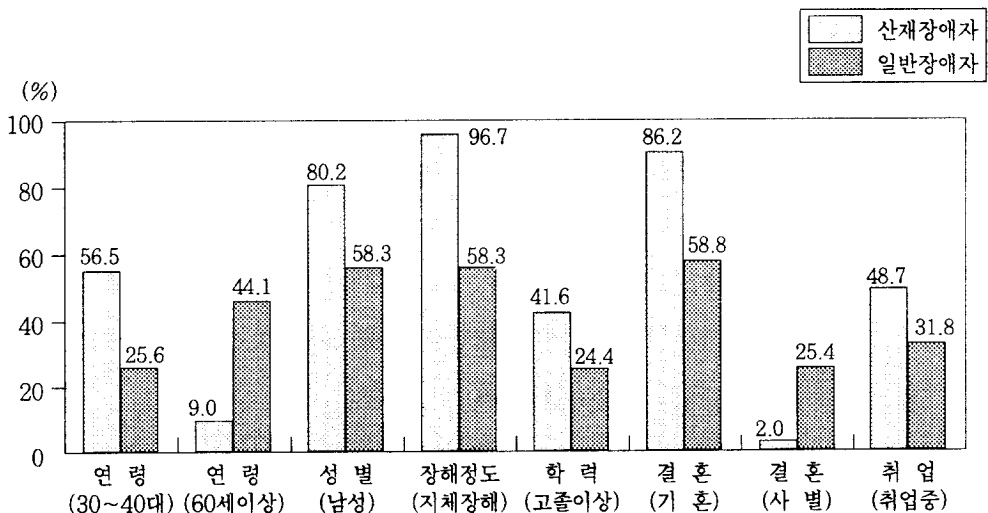
- 최근 10년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후 1~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산재장해자는 약30만명정도(중장해자 35,000명) 추정되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해자는 약 36.5% 해당(표본조사)

※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약 130만명 정도이며 68.6%가 등록된 장애인임

2. 産災障害者の 特徴

- 산재장애자는 일반장애인과 비교하여 발생시기, 유형, 장애정도 등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
 - 산재장애자는 지체장애자(96.7%)가 대부분이며, 장애부위는 상지(上肢)가 차지하는 비율이 (46.7%) 높고, 하지(21.2%), 척추(16.8%) 순서이며
 - 30~40대(56.5%)의 연령으로, 남성(80.2%)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, 기혼(86.2%)이 대부분임
 - 학력수준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41.6%를 차지 하는 등 일반장애인 보다 학력이 높으며
 - 장애발생 이후 48.7%가 취업하고 있으나 상시고용·자영등 안정된 직업 복귀율은 36.9%에 불과함.

〈산재장애자와 일반장애인 비교〉



※ 노동연구원 실태조사(2000. 5), 보건사회연구원(95)

- 산재근로자의 51.4%가 특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
- 경장해자의 경우 33.7%는 재취업의사가 있으며, 재취업시 일하고 싶은 곳은 일반기업체(41.6%), 자영업(15.8%) 순서로 나타났고, 재취업시 지원 사항으로는 80.8%가 취업알선을 요구

〈산재근로자 취업실태〉

(단위 : %)

취업실태	전체	산재장해등급		
		1~3급	4~7급	8~14급
○ 건강상문제로 취업불능	30.8	76.3	57.6	18.7
○ 취업	48.6	15.8	26.0	58.2
- 상시고용	31.4	7.9	15.2	38.3
- 시간제고용	11.7	5.3	6.5	13.8
- 자영업	5.5	2.6	4.3	6.1
○ 적극적 구직활동중	13.4	5.3	9.8	15.3
○ 기타	7.2	2.6	6.6	7.8

※ 자료 :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(2000. 5)

- 산재이후 실질소득이 43% 감소되는 등 경제적 역할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장해정도가 심할수록 심함

〈산재근로자 산재이전·이후의 월 평균소득 비교〉

(단위 : 만원)

소득수준	전체		1~3급		4~7급		8~14급	
	산재이전	산재이후	산재이전	산재이후	산재이전	산재이후	산재이전	산재이후
평균	128.9	72.9	110.3	65.0	137.0	76.0	128.4	72.8

※ 자료 :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(2000. 5)

3. 産災障害者の 欲求

가. 心理的 葛藤解消을 위한 積極的 相談欲求

- 산재사고 이후 육체적 변화 등에 따른 심리적 갈등심화로 인한 적응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상담욕구가 많음

문 제	상담의 필요성 정도			
	전혀 필요 없음	별로 필요없음	필요한 편 임	매우 필요함
장애 및 건강문제	4.8	25.5	50.0	19.8
심리적 갈등 및 정신건강문제	11.3	33.4	34.5	20.9
가족갈등문제	14.5	45.4	27.0	13.1
취업문제	7.6	27.3	32.8	32.3
사회적응문제	14.8	34.7	30.6	19.9
주변사람들과의 관계문제	16.7	40.7	30.7	12.0
산재보상 및 절차에 관한 내용	7.0	18.6	45.2	29.2

※ 자료 :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(2000. 5)

나. 重症障害者を 위한 保護施設 欲求

- 중증장애자를 위한 보호시설(care-center)은 산재장애자 10명중 3명 정도가 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강도가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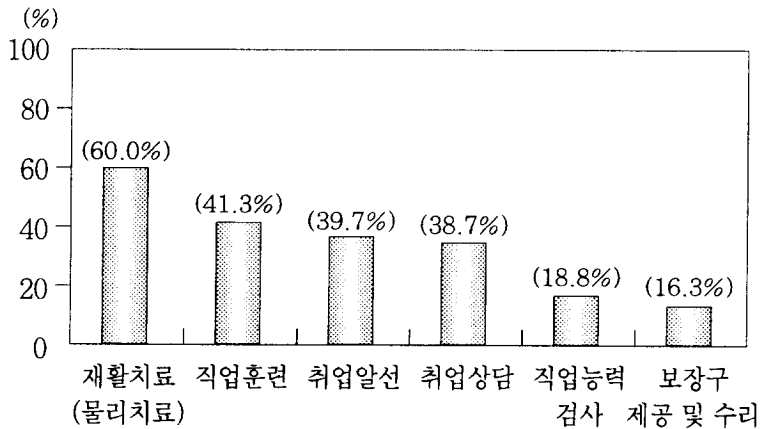
보 호 서 비 스	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			
	전 체	산 재 장 해 등 급		
		1~3급	4~7급	8~14급
장기요양서비스	30.1	51.3	40.0	25.2
주간보호서비스	36.2	53.8	40.6	33.1
단기보호서비스	35.9	46.2	41.1	33.4
가족동반 보호서비스	28.2	33.3	30.5	27.1
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	31.9	43.6	33.7	30.1

※ 자료 :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(2000. 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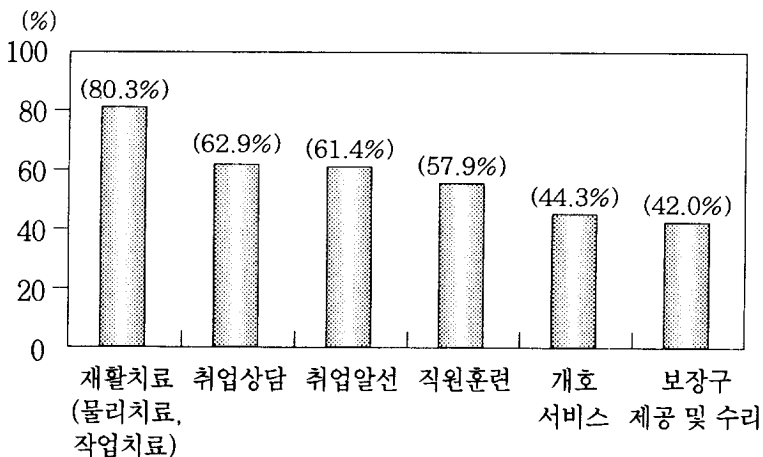
다. 再活서비스 認知度 및 再活에 대한 欲求

- 산재장해인에게 국가 또는 민간기관에서 시행중인 재활서비스에 대하여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재활치료로서 60% 이상이 알고 있으며, 인지도가 높은 재활서비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갖고 있음.

〈재활서비스 인지율〉



〈재활서비스 필요정도〉



※ 자료 :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(2000. 5)

Ⅲ. 推 進 方 向

1. 與 件

○ 産災勤勞者の 再活欲求 増加

- 경제발전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사회복지 욕구 증가
- 의료적 치료나 경제적 지원이외에 사회복지귀를 촉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재활정책 요구

○ 産災保險의 綜合的 社會安全網으로의 役割 必要

- 사후보상 위주의 보험적 성격의 관리시스템에서 예방-보상-재활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
- 산재근로자를 주어진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아닌 독립적 생산활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통한 생산적 복지의 실현

○ 一般障碍人 福祉施策의 變化

-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(1998~2002),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(1998~2002)에 의거 장애인들이 "일"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·시행됨에 따라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정책의 연계 필요성

○ 最近 失業増加 등 經濟的 與件으로 長期療養者 계속 増加

- 경제성장 하락 추세로 직업복귀 보다는 휴업급여 등 금전보상에 의존하려는 경향 상존

※ 6개월이상 장기요양자 현황 : '97년 16,890명 → '98년 14,857명
→ '99년 15,077명 → 2000년 18,042명

2. 推進目標 및 方向

가. 目標

- 예방·보상·재활사업의 균형발전으로 산재보험의 생산적 기능 제고
- 산재근로자의 조기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

나. 推進方向

1) 基本方向

- 災害發生에서 再活까지 總體的 서비스體系 構築
 - 산재근로자 개별정보시스템 및 관리체제 도입
- 再活事業 活性化 基盤 造成
 -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·시행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기반 조성
- 再活事業 定着을 위한 法的 制度的 補完
 - 산재보험법령 정비 및 재활사업 조직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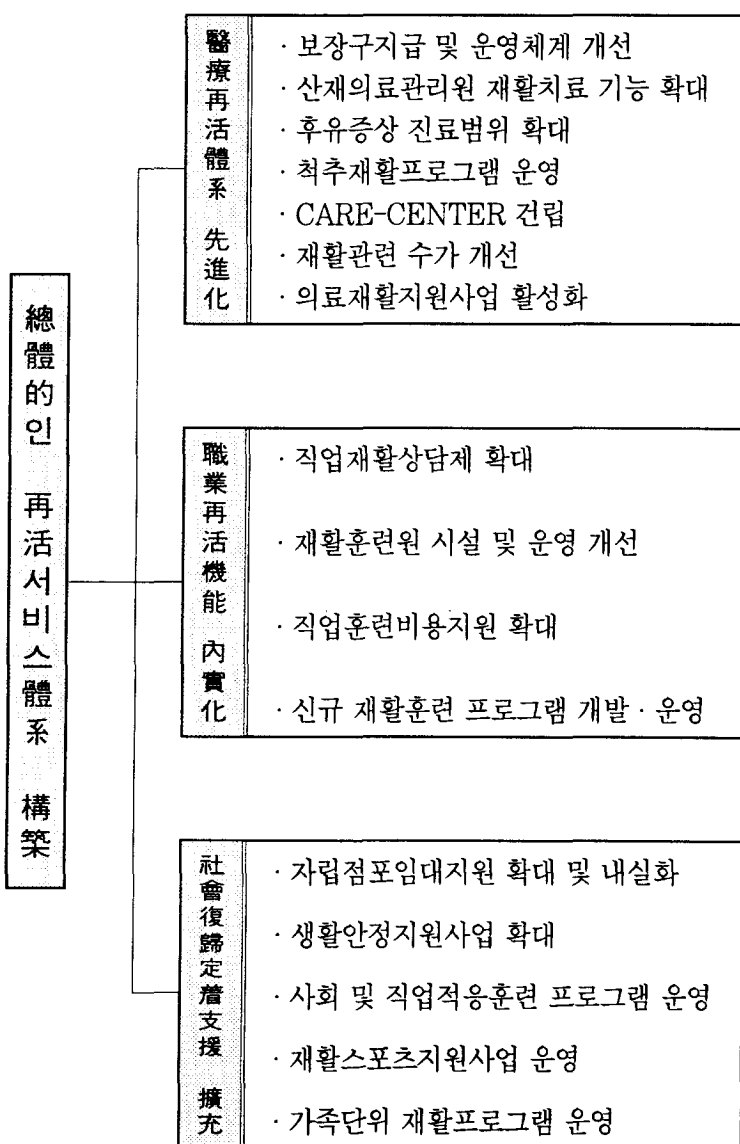
2) 推進方向

- '보상' 위주에서 '전인적 책임'으로 방향전환
 - 산재근로자에 대한 시각을 금전보상 중심에서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(잔여 노동력 최대한 활용 → 생산적 근로자로 전환)

- 수요자 중심의 재활사업 운영
 - 재해발생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
 - 산재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
-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재활사업체계 정착
 -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부합되고, 민영보험 및 일반장애인 재활체계와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
- 재활서비스 조기개입 체제 구축
 - 요양기간중 직업재활상담 등을 통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 개선
 - 재해발생 초기부터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실효성 제고
- 기존 사업 활성화 추진 및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
 - 후유증상진료제, 재활훈련원, 직업훈련비용지원, 직업재활상담제, 자립점포임대지원 등 기존 사업 활성화 추진
 -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
-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을 병원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전환
 - “늘같이 운동”, “통합형 재활시스템(IRP) 운영” 등 선진국형 재활프로그램 도입

IV. 細部推進計劃

1. 計劃總括



2. 醫療再活體系의 先進化

가. 補裝具 支給 및 運營體系 改善

1) 現況 및 問題點

- 보장구 지급회수 제한 및 지급시스템 낙후
 - 연령 및 상병부위에 관계없이 부위별 2회 지급
 - 보장구 지급품목 및 지급액의 현실화 미비
- 보장구 지급후 정착훈련등 사후관리체제 미흡
 - 치료종결후 지급된 보장구 사용에 대한 생활적응훈련 미실시로 기능결손에 따른 실질적 보호역할 취약
- 보장구 지급액의 비현실화로 산재환자 부담액 가중

2) 推進計劃

가) 산재보험 보장구관련 급여품목 확대 및 현실화(2003년,재활공학연구센터)

현	행	개	선
12종목 67품목		20종류 90품목	
○ 보장구 : 전4박 절단의지 등 11종 66개품목		○ 보장구 : 고관절 의지등 11종 80품목 (14품목 증)	
○ 치료훈련 : 보행훈련 1종 1품목		○ 치료훈련 : 9종 10품목 ⇒ 완전지급 및 평생관리제 도입	

나) 보장구 지급 시스템 개선(2003년, 재활공학연구센터)

현	행	개	선
○ 전국 각 지정병원 및 민간의지 상사 또는 재활공학연구센터		○ 1회분 : 전국 각 지정병원 및 민간의지 상사 ○ 2회분 : 재활공학연구센터에서 무상 지급	

※ 보훈병원과 같이 2회분 보장구는 재활공학연구센터에서 지급하고 보조기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예산으로 편성

다) “늘같이 운동”의 활성화(2001년, 재활공학연구센터)

-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원격진료 및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

※ 늘같이운동 : 24시간 ON-LINE상담이 가능하고 전국 순회 이동작업차량 이용, 산재장해자 거주지에서 보장구를 공급하는 체제

라) 통합형 재활시스템(IRP : Integrated Rehabilitation Program) 운영(2001년, 재활공학연구센터)

- 절단 및 마비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에 따른 생활적응훈련 및 가상 운전 교육 등

- 직업 및 사회복귀에 직결되는 생활적응훈련 실시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24억원	23억원	23억원	20억원	20억원

나. 再活關聯 酬價 改善

1) 現況 및 問題點

○ 산재환자 특성에 부합되는 산재보험수가 체제 미비

- 후천적 장애인을 치료하는 외상후증후군 등, 장기요양 환자에 필요한 정신 및 신체적 재활치료수가 기준 미비
-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회수 제한 및 항목 제한으로 산재환자 대부분에게 물리치료 위주로 제공

2) 推進計劃

가)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는 재활수가체제 마련(2001 -2002)

- 자동차 보험과 같이 재활관련수가 등 별도기준 마련

나) 재활관련 수가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

- 물리치료 및 정신치료부분 수가 개선에 관한 연구(2001년)
- 화상환자 등의 성형수술 등 재활관련 진료수가 개선에 관한 연구(2002년)

3) 所要豫算

- 2억원(2001년, 2002년 각 1억원씩)

다. 後遺症狀 診療範圍 擴大

1) 現況 및 問題點

○ 2000.7.1부터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치료종결자에게도 통증 등 후유증상에 대하여 진료,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

- 대상상병 : 척추손상등 11개 상병
- 진료기간 : 2~6년
- 예 산 : 56억원(3,000명)

○ 휴유증상 대상상병 및 진료범위 한정으로 이용실적 부진

2) 推進計劃

○ 진료대상 상병 및 범위확대

- 목 표 : 3천명(2001년) → 12천명(2005년)
- 진료대상 상병을 진폐증 등 순환기 질환, 절단부위 동통 등까지 확대
- 진료기간 연장 등 다각적 개선방안 검토
- 2001년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거쳐 2001년 하반기 결정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56억원	58억원	77억원	96억원	116억원

라. 脊椎再活 프로그램 運營

1) 現況 및 問題點

○ 산재근로자중 장기요양 요인이 가장 많은 척추재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·심리재활프로그램이 없음에 따라 척추재해자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미흡

※ 2000. 11월 현재 전체요양환자 29,900명 중 척추요양환자는 37%인 10,952명임

2) 推進計劃

가) 척추재해자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(2001년,공단)

- 요양종결후 통증관리 및 척추강화프로그램
- 심리치료 등을 통한 재활의지 회복프로그램 등

나) 요통학교(BACK SCHOOL) 운영 검토

- 목 표 : 200명(2002년 시범실시) → 1,500명 (2005년)
-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
-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보완 후 전면실시 및 확대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-	3억원	15억원	30억원	45억원

마. 醫療再活 支援事業 活性化

1) 現況 및 問題點

- 진폐환자 등 장기요양환자의 정서적 ·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하여 취미활동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참여율 저조
- 지원액 : 1인당 2만원이내의 취미활동 재료비

2) 推進計劃

- 취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의 개선 · 보완(2001년 ,근로복지공단)
- 진폐환자에 적합한 취미활동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보급 등(2001년 연구용역 실시)

3) 所要豫算 : 2001년 - 2005년까지 매년 1억2천만원 투자

바. 産災醫療管理院의 再活治療 機能 擴大

1) 現況 및 問題點

- 산재의료관리원은 장기환자등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활치료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물리치료 수준에 불과

〈산재의료관리원 재활관련 전문인력〉

분 야 별	재활의학전문의	물리치료사	작업치료사	재활사회복지사
인원(명)	3개기관(4명)	9개기관(64명)	2개기관(4명)	-

- 요양치료중인 환자들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재활적응훈련은 인천중앙병원이 유일하게 실시(공예과 등 7개공과 운영)
- 비전문 조직에 의거 운영되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낮음
- 적응훈련의 개념 및 목적이 분명치 않아 실효성 저조

〈인천중앙병원 재활적응훈련 실적〉

누 계	'79~'94	'95	'96	'97	'98	'99	2000.9
12,881(명)	10,338	448	448	454	458	439	296

2) 推進計劃

가) 작업치료 중심으로 재활적응훈련 확대개편

- 목 표 : 400명(2001년) → 4,500명(2005년)
- 획일적인 교사중심에서 재활의학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병행운영
 - 소요인력 확보는 연차별 계약직으로 확보
- 훈련과정등을 개편하여 산하병원으로 년차적 확대실시
 - 2001년 : 인천중앙병원 시범 실시
 - 2002년 : 경기요양병원, 창원병원, 대전중앙병원
 - 2003년 : 태백, 동해, 정선병원
 - 2004년 : 안산, 순천병원

나) 작업치료부분의 진료수가화 검토(2001년)

- 수가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시 포함하여 검토

3) 所要豫算(재활적응훈련 확대개편)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
소요예산	5억원	10억원	10억원	10억원

※ 해당의료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

사. CARE-CENTER 建立推進 檢討

1) 現況 및 問題點

- 산재 중장해자는 가족이 부양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 미비로 인하여 요양종결을 기피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고 의료기관은 수익을 저하로 산재환자 기피
- 산재 중장해자를 개호함에 따른 가족의 취업불안 해소 필요

2) 推進計劃

가) CARE-CENTER 건립

- CARE-CENTER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(2001년)
 - 고령·중증장해자 간병을 위한 주요시설 및 근로자 시설이용료부담 방안 등 운영방법
 - 중장해자의 수시간병, 가사지원 등을 위한 단기개호서비스(홈헬퍼 파견) 제공 등 다양한 개호서비스 방안
 - 경기요양병원 여유부지 활용 또는 경기요양병원을 CARE-CENTER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 병행 검토
- 진폐환자 보호요양시설 건립
 - 치료종결된 중증의 진폐환자등 진폐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요양 및

휴양시설

- 진폐환자 집중지역을 고려 건립 추진

※ 근로자 시설 이용 부담등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확정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-	50억원	80억원	75억원	95억원
특별간병시설 (1개소)	세부계획수립	40억 (설계, 건축 30%)	50억 (건축 40%)	45억 (건축 30%)	65억 (장비 및 시설)
보호요양시설 (1개소)	세부계획수립	10억 (부지매입, 설계)	30억 (건축 50%)	30억 (건축 50%)	30억 (장비 및 시설)

3. 職業再活機能의 內實化

가. 職業再活相談制 擴大運營

1) 現況 및 問題點

- '99. 9. 시범실시, 2000.1. 공단 전지사 및 훈련원에 55명이 배치되어 운영중
- 직업재활상담원은 산재근로자에게 지속적 상담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인력이나 산재근로자 과다로 효율적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

2) 推進計劃

- 직업재활상담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
 - 직업재활상담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
 - 목 표 : 55명(2000년) → 100명 (2001년)
 - 업무량이 많은 1급지 지사 및 산재환자가 많은 보험시설에 배치하여

요양시부터 충분한 심리재활 병행 실시

· 지사별 산재근로자수를 파악하여 2002년 추가배치 검토

- 직업재활상담제 질적수준 제고를 위하여 직업재활상담원 의 전문교육 실시 및 재활 전과정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11억원	22억원	24억원	26억원	28억원

나. 再活訓練院 運營 內實化

1) 現況 및 問題點

- 안산, 광주훈련원 중심으로 의상, 인쇄매체 등 1년과정의 직업 훈련 실시
- 제한된 훈련공과로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등급별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욕구 수용에 한계

2) 推進計劃

가) 재활훈련원 1개소 건립(2000 - 2003년 : 근로복지공단)

- 건립장소 : 경남 울주군
- 건립기간 : 2000 ~ 2003년

나) 안산, 광주훈련원 수용능력 확대 및 교과목 등 개선 (2001-2002년 : 근로복지공단)

○ 목 표 : 230명(2001년) → 500명(2005년)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목표인원	230명	250명	460명	460명	500명

※ 신규 건립되는 재활훈련원 인원포함

○ 훈련과목 및 시설·장비 등 개선

- 안산훈련원에 1개 훈련공과 신설 (2002년)
- 창업 등을 위한 훈련교과과정 개편 (2001년)
- 노후 시설·장비 교체 등 환경변화에 대처 (2002년)

※ 설립년도 : 안산('85년), 광주('92년)

다) 훈련생에 대한 지원 및 재활상담서비스 확대

- 자영업에 위한 사후지원 프로그램 개발
- 수료생에 대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지원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	143억원	105억원	70억원	80억원	85억원
소요예산	건립예산 120억원 포함	훈련공과신설 (안산 1개) 건립예산 75억	운영비	운영비	운영비

다. 職業訓練費用 支援事業 活性化

1) 現況 및 問題點

- 훈련원의 지역적 한계 및 훈련직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실시
- 사설학원 중심의 위탁훈련 실시 및 사후관리 미비로 수료생의 사회복귀 실적 저조

2) 推進計劃

가) 직업훈련비용지원 대상 확대 (2001-2005년, 근로복지공단)

- 목 표 : 800명(2001년) → 1,000명(2005년)

-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재활상담서비스 제공 및 훈련 수료후 취업/자영 등 직업복귀 지원서비스 제공
- 나) 공공훈련기관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위탁훈련 방안 검토(2002년, 근로복지공단)
- 재활훈련 수요등을 고려 산재근로자 실태 및 특징에 부합되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탁훈련 실시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8억원	16억원	19억원	21억원	26억원

4. 社會復歸 定着 支援事業의 擴充

가. 自立店鋪 賃貸支援事業 擴大

1) 現況 및 問題點

- 기능훈련을 마친 재활훈련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자영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점포를 임대지원
- 대 상 : 안산, 광주훈련원 이수자
- 지원내용 : 5,000만원 한도의 임대 전세금 (이율 2%)지원
- 지원기간 : 최장 4년 지원

2) 推進計劃

- 수혜대상을 직업재활훈련 수료생 및 산재근로자 전체로 연차적 확대 (2001년, 근로복지공단)
- 목 표 : 80명(2001년) → 500명 (2005년)

○ 창업 전후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성공률 제고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41억원	100억원	150억원	150억원	150억원

나. 産災勤勞者 生活安定 支援事業 擴大

1) 現況 및 問題點

○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수혜대상 한정 및 수혜범위 차등으로 형평성 문제 야기

- 지원대상 : 1-7급장애자, 상병연금수혜자, 유족
- 훈련원 이수자와 생활정착금 대부 한도 차등

2) 推進計劃

가)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 대부사업 확대

- 목 표 : 780명(2001년) → 1,800명 (2005년)
- 대부금액의 현실화(물가인상 등을 감안)
- 주택개량자금, 장애인용 자동차구입자금 등 대부사업 범위 확대
- 8~14급 경장해자에 대한 대부 단계적 실시

나) 산재근로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수혜범위 확대

- 목 표 : 장학금 6,000명(2001년) → 6,400명 (2005년)
- 학자금 1,000명(2001년) → 2,350명 (2005년)
- 수혜범위를 8~14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
- 중고생 학자금 전액 지원과는 별도로 성적 또는 장애등급에 따라 학자금 추가 지원제도 도입

다) 대학의 재할관련학과등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

- 재할관련학과 범위 및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 의무복무기간 부여등
은 추후 계획수립

3) 所要豫算(기금확충)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80억원	110억원	140억원	170억원	200억원
정착금	40억원	50억원	60억원	70억원	80억원
장학금	40억원	60억원	80억원	100억원	120억원

다. 社會 및 職業適應訓練 프로그램 運營

1) 現況 및 問題點

- 산재근로자는 신체 · 정신적 위축으로 직업적응이 곤란하므로 심성계발 등을 통하여 직업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나 미흡한 실정
- 사회적응훈련 및 기초적 직업교육으로 원활한 직업 및 사회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할 필요

2) 推進計劃

가)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위탁훈련실시

- 목 표 : 200명(2001년) → 2,000명 (2005년)
- 대 상 : 심리적으로 즉시 직업 및 사회복귀 실현이 곤란한 자
-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직업복귀전 심리교육 실시로 재할의욕 고취
(5박6일 위탁교육 실시)

나)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

- 직업교육, 소자본 창업컨설팅 등 취업 및 자영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

- 안산, 광주훈련원은 자체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, 훈련비용지원사업 훈련생 및 기타 산재장애자에게는 위탁훈련 실시

다) 장애인재활사업 운영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

- 산재근로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등 검토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1.5억원	4억원	8억원	12억원	16억원

라. 再活스포츠 支援事業 實施

1) 現況 및 問題點

- 팔·다리 기능장애, 척추 및 신경계통 등 근골격계 장애자를 대상으로 단기 요양 후 적절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애부위의 원활한 기능회복 기대

2) 推進計劃

가) 재활스포츠 활동 소요비용 지원

- 목 표 : 100명 시범실시(2001년) → 500명(2005년)
- 대 상 : 치료종결(예정)자로서 척추장애 등으로 인한 기능 손실자
- 지원범위 : 월 10만원씩 6개월 한도
- 2001년 시범실시후 연차적으로 수혜범위 확대

나)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센터에 심리치료 차원의 취미·스포츠교실 운영 검토

- 수영장, 볼링, 실내활동등 장애인 스포츠 시설등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0.6억원	2억원	4억원	5억원	6억원

마. 産災勤勞者 家族單位 再活프로그램 運營

1) 現況 및 問題點

- 산재근로자 자녀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 구성원의 사회에 대한 소외의식 극복 및 산재근로자 재활의욕 고취

2) 推進計劃

가) 산재근로자 가족과 함께 하는 재활프로그램 개발

- 산재근로자 자녀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전환
- 산재가족 캠프등 실시

나) 의료기관 순회 “작은음악회” 개최

- 산재근로자가 많이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재활의식 고취

3) 所要豫算

연 도 별	2001	2002	2003	2004	2005
소요예산	3억원	3억원	3억원	3억원	3억원

5. 産災勤勞者 情報管理システム 構築

1) 現況 및 問題點

- 산재보험 전산프로그램이 사업장 위주로 되어 있어 산재환자의 요양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부재

2) 推進計劃

- 산재근로자 재활 전과정 D/B 구축(2001년, 근로복지공단)
 - 공단 신정보시스템 관련 재활프로그램 개발
- 직업알선기관과의 연계방안 강구 (2001년, 근로복지공단)
 - 고용안전망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산망과의 연계 추진

Ⅳ. 展 望(向後 期待效果)

1. 展 望

- 합리적 요양관리 등 보상제도의 정착
 - 산재근로자가 금전보상보다는 점차 재활서비스 확대요구로 변화 예상
 - 직업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고령의 산재근로자, 진폐 등 직업병 환자의 사회 재활 수요 수용
- 재활사업의 확고한 기반 구축
 - 재활사업 5개년계획에 의한 연차적 사업운영 및 예산투자로 재활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제고
 - 재활서비스 수혜자가 현재 약 15,000명에서 약 60,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조기 사회복귀 및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
 - 중증장애 또는 고령으로 직업복귀가 곤란하거나 진폐 등 직업성질환으로 계속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는 간병 및 요양시설 건립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산재근로자 본인 및 그 가족을 대신하여 생활보호 역할 가능
 -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는 산재장애자의 직업복귀율을 현재 37%에서 약 70% 수준까지 향상시킴으로써 요양기간의 단축 등 금전보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게 하여 산재보험기금의 비용절감 효과
- 산재근로자의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
 -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보장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데 크게 기여.

2. 附隨的인 期待效果

○ 再活投資額 增加

	<u>2000년</u>		<u>2005년</u>
산재보험기금대비투자율	1.32%	➡	3.16%
투자규모	227억원	350% 증	791억원

○ 受惠人員 增加

	<u>2000년</u>		<u>2005년</u>
수혜인원	15천명	➡	60만명
		400% 증	

○ 職業復歸率 向上

	<u>2000년</u>		<u>2005년</u>
직업복귀율	37%	➡	70%
		190% 증	
년평균요양기간	120일		93일
		매년 5% 절감	
휴업급여절감	6.800억원		5.260억원

Ⅵ. 年次別 事業計劃 및 所要豫算

(단위 : 억원)

사 업 명	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				
	2001	2002	2003	2004	2005
계	375.3	508.2	624.2	699.2	791.2
○ 기존 사업 활성화	370.2	446.2	514.2	574.2	626.2
- 보장구지급체계 개선	24	23	23	20	20
- 재활관련 요양비기준 개선	1	1	-	-	-
- 후유증상진료제	56	58	77	96	116
- 산재의료관리원 재활 중점 육성	5	10	10	10	-
- 직업재활상담제	11	22	24	26	28
- 재활훈련원 건립운영	143	105	70	80	85
- 직업훈련 위탁훈련	8	16	19	21	26
- 자립점포임대지원	41	100	150	150	150
- 의료재활지원사업	1.2	1.2	1.2	1.2	1.2
- 생활안정지원사업	80	110	140	170	200
○ 신규 사업 개발	5.1	62	110	125	165
- 사회 및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	1.5	4	8	12	16
- 재활스포츠지원	0.6	2	4	5	6
- 척추재활프로그램	-	3	15	30	45
- care-center 등 건립	-	50	80	75	95
-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	3	3	3	3	3

붙임

외국의 재활사업

1. 美 國

- 담당기구 : 연방정부(교육부산하)에 "재활서비스청" 주정부에 "직업재활국"이 있으며 정부에서 직접관장
- 수혜대상 : 일반장애인과 산재장해인의 구별 없이 통합운영
- 사업내용 : 조언, 상담, 취업알선, 직업훈련, 재활비용지원,비즈니스 창업프로그램, 민간재활전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

2. 獨 逸

- 담당기구 : 산업별로 구성된 산재보험조합내 "직업재활국"에서 직접관장
- 수혜대상 : 일반장애인과 산재장해인의 구별 없이 통합운영
- 사업내용
 - 보험급여 종류에 재활급여를 두고 재활에 따른 비용을 현물급여로 지급
 - 보철, 개호, 재활진료, 훈련비용, 장애인 고용업체 보조금
 - 사회재활에 따른 비용지급(심리적상담, 여행경비, 장애차량 특수시설 설비, 재활스포츠 등 비용지원 등)
 - 장애인전용 민영훈련시설 24개소 운영
 - ※ 연방정부, 노동사회성, 주정부, 연금보험, 산재보험등에서 출자

3. 日 本

- 담당기구 : 노동복지사업단에서 관장
- 수혜대상 : 산재장해인에 대한 재활사업 별도 운영
 - ※ 단, 재활훈련원, 취업알선 시스템은 일반장애인과 산재장해인의 구별 없이 통합운영
- 사업내용
 - 노재근로자 보험시설 설치·운영
 - 노재병원(39개소), 종합척손센터(1개소), 리헤빌리테이션학원, 리헤빌리테이션 공학센터, 노재특별개호시설
 - 노재근로자 사회복귀촉진사업
 - 피재근로자휴양소(9개소), 주택개호자금대부, 리헤빌리테이션작업소, 자동차 교습소

담 당 자 산재보험과장 정 순 호
 행정사무관 김 순 립
 산재보험과 윤 용 석

※ 이 책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부 산재
보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TEL : (02)503-9761, (02)500-5598

FAX : (02)507-3734

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

2001년 1월 20일 인쇄

2001년 1월 20일 발행

발 행 : 노 동 부

편 집 : 산재보험과 503-9761

인 쇄 : (주)문원사 ☎ 739-3911~5